

# 보도자료



보도	2024.11.7.(목) 조간	배포	2024.11.6.(수)		
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	책임자	국 장	오상완	(02-3145-8100)
	기업공시총괄팀	담당자	팀 장	김준호	(02-3145-8475)
	금융감독원 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팀 장	장정훈	(02-3145-5582)
다다ㅂ셔	한국거래소	책임자	부 장	홍성찬	(02-3774-8730)
담당부서	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	담당자	팀 장	강희정	(02-3774-8740)
	한국거래소	책임자	부 장	김성곤	(02-3774-9800)
	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	담당자	팀 장	허 승	(02-3774-9090)
	한국거래소	책임자	부 장	진동화	(02-3774-9060)
	시장감시본부 감시심리부	담당자	팀 장	우민철	(02-3774-9061)

# 「단일판매·공급계약」의 허위·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계약체결시 공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, 진행상황의 정기보고 강화
-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 기대

### - 주요 내용 -

- □ (개요)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「단일판매·공급계약」 관련 불성실 공시(공시번복, 공시불이행 등)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
  - 최초계약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,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('24.11.15. 개정)

### <서식개정 및 업무개선 주요내용>

- ① 계약체결시 **주요 정보**(계약금·선급금 유무, 대금지급 조건 등)를 **구체적으로 기재**하고 원칙적으로 **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** 중 **하나만 공시유보** 허용(한국거래소 수시공시)
- ② 계약체결 공시 이후 **반기별로 정기보고서**(반기·사업보고서)에 계약 진행현황 및 미진행시 사유,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(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)
- ③ 허위·과장성 공시 및 이에 대한 **불공정거래 의심사항**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**거래소 시장감시** 및 **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** 기능간 **정보공유를 강화**
- □ (기대효과) 공시내용 및 기관간 협조 강화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, 허위·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불공정 거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 1 현황 및 문제점

- □ (현황) 최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·공급계약 체결\* 관련 불성실공시\*\*가 증가
  - \* 매출액의 일정 비율(유 : 5%, 코 : 10% & 3억원) 이상 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
  - \*\*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% 미만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  - 경기침체 등 **경영환경 악화의 영향**이 크나, 계약 해지 발생 전까지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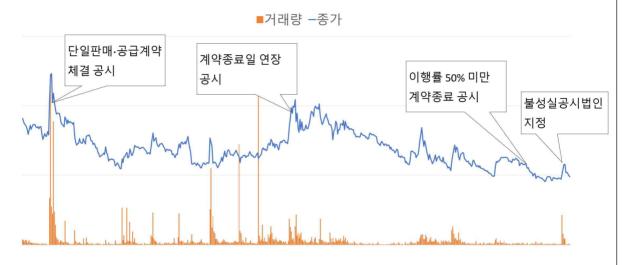
구 분		'20	′21	′22	'23	'24.상		
	전체 불성실공시(A)	15	18	21	36	11		
유가	공급계약 불성실(B)	1	3	5	5	1		
	비율(B/A)	6.7%	16.7%	23.8%	13.8%	9.0%		
코스닥	전체 불성실공시(A)	129	109	56	81	54		
	공급계약 불성실(B)	8	23	9	8	10		
	비율(B/A)	6.2%	21 2%	16.1%	9 9%	18 5%		

【 최근 5년간 단일판매·공급계약 불성실공시 현황 (단위 : 건) 】

- □ (문제점)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,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음
  - (계약정보 제한) 거래소 공시서식상 **주요 계약조건은** 기업이 **자유롭게 서술**할 수 있어 **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**가 **불충분**할 수 있음
    - 또한, 주요 내용(계약상대방, 계약금액)을 전부 비공개\*할 경우 정보가치가 저하될 가능성도 높음
      - \* 기업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에 주요내용 비공개(공시유보) 신청 가능
  - (진행경과 정보 부족)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(사업·반기·분기)에 기재\*할 수 있으나, 기재내용이 형식적\*\* 또는 미기재하는 경우도 존재
    - \* 포괄적 공시 진행상황(주요사항보고서, 거래소 수시공시 등 진행상황 기재)
    - \*\* 예 : 진행상황을 '진행중'으로만 기재
  - (투자자 피해 우려) 대규모 수주계약이 **테마주와 결합**될 경우 허위·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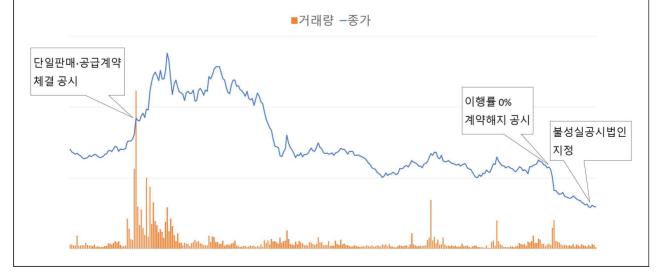
### [참고] 단일판매·공급계약 불성실공시 관련 주가 급등락 사례

- □ (사례1) 코로나 백신 관련 궁급계약 체결 공시
  -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으며, 공시 전후 주가 급등락(공시 전후 10거래일 62.3% 상승, 40.4% 하락)
  - 동사는 계약금액의 50% 미만 이행으로 계약을 종료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



## □ (사례2) 2차전지 관련 공급계약 체결 공시

- B사는 **2차전지**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**계약상대방 비공개**로 공시했으며, **공시 전후 주가 급등**(공시 전후 10거래일 78.1% 상승)
- 동사는 계약체결 1년만에 **이행률 0%로 계약을 해지**하여 **불성실공시법인 지정**



# 2 궁시관리 강화방안

- ◆ 허위·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
  - 또한,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-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

# 

- □ (공시서식 세분화) 단일판매·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관련 항목 구체화
  -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<sup>\*</sup>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
    - \* 예시 : 계약금·선급금 유무, 대금지급 조건 등
- □ (공시유보 관리 강화) 정보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유보 (비공개) 신청 허들을 높이고,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 안내
  -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中 하나만 공시유보 가능하도록 공시운영
    - 다만,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**불가피한 사유**\*에 한하여 **전부**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을 최소화
      - \* 예시 : 기업의 지속적 영업활동에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
  - 공시유보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사항
    문구\*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관리
    - \* 예시 : 계약의 주요내용이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로 인해 비공개되었으므로, 투자자는 계약의 변동·해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
나

- 사후 관리 강화 : ① 공시 진행상황 중간보고 구체화<sup>(금감원)</sup>
  - ②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(금감원, 거래소)
- □ (별도 진행상황 보고 구체화) 정기보고서(반기·사업보고서)에 단일 판매·공급계약체결 공시의 진행현황\*,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(반기보고서·사업보고서)로 상세히 기재
  - \* 신고일자, 계약내역, 계약금 수령 여부, 진행률 등
- □ (기관간 업무협조 강화)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·정기적으로 점검하고
  - 허위·과장공시를 이용한 **불공정거래**에 대해 **신속**하게 **조치**할 수 있도록 기관 내\*는 물론 기관간 업무협조\*\* 체계를 **강화**할 예정
    - \* (금융감독원) 공시부서 조사부서 / (한국거래소) 공시부 감시심리부
    - \*\* (금융감독원→한국거래소) 시장감시 의뢰 / (한국거래소→금융감독원) 심리결과 신속 통보

#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□ (투자정보 확대) 단일판매·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 계약 시점 및 이후 진행상황까지 충분히 제공되어 투자판단에 참고 가능
- □ (불공정거래 예방) 허위·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⇒ '24.11.15.자로 **정기보고서** 서식(금융감독원) 및 **단일판매·공급계약체결** 수시공시 **서식**(한국거래소)을 **개정**\*
    - \* 정기보고서는 개정 이후 최초 제출하는 반기・사업보고서부터, 수시공시는 '24.12.2.부터 시행
    - **공시유보 관리강화** 내용 별도 **안내**('24.11월 중) **등 기재사항 교육 실시** 및 **'24년도 사업보고서** 대상 **개정서식 준수** 여부 **중점 점검 실시** 예정

<sup>☞</sup>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# 붙임1

##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(별지서식 포함) 개정 내용

#### 햀 개 정 아

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절 공시내용의 진행·변경상황

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 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진행상황을 기재하고, 신고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함께 기재한다.

### 【 작성지침 】

i .~iii. (생략)

iv. (신설)

<별지 제35호 서식> : 사업(반기, 분기)보고서 XI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【 작성지침 】

- i.(생략)
- ii.분기보고서의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장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연도 중 변동사 항이 있는 경우 제11장제1절 및 제11장제2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절 공시내용의 진행·변경상황

제11-1-1조(공시사항의 진행·변경상황) ① 주요사항보고서 제11-1-1조(공시사항의 진행·변경상황) ① (현행과 같음)

#### 【 작성지침 】

i .~iii. (생략)

- iv.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전에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단일판매-공급계약체결 공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,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.
  - 진행상황

신고	계약 내역	계약금액 총액	판매공	급금액	대금수령금액	
일자			당기	누적	당기	누적

- 대금 미수령 사유
- 향후 추진계획
- 가. 계약내역에는 계약명, 계약상대방, 계약기간, 주요 계약조건, 조건부 계약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한다. 다만, 단일판매·공급계약체결 시 공시 유보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
- 나. 판매·공급금액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실제 계약상대방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와 누적으로 나누어 기재한다.
- ※ (작성기간 예시) 12월 결산법인의 경우
  - 당기: '24.1.1. ~ '24.12.31.('24년도 사업보고서) '25.1.1. ~ '25. 6.30.('25년도 반기보고서)
  - 누적 : 최초계약일 ~ '24.12.31.('24년도 사업보고서) 최초계약일 ~ '25. 6.30.('25년도 반기보고서)
- 다. 대금수령금액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금을 당기와 누적 으로 나누어 기재한다.
- 라. 대금 미수령 사유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누적 대금수령 금액이 0인 경우 해당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.
- 마. 향후 추진계획에는 향후 판매·공급 이행,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 을 기재하되,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한다.

<별지 제35호 서식> : 사업(반기, 분기)보고서

XI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【 작성지침 】

- i.(현행과 같음)
- ii.분기보고서의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장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연도 중 변동사 항이 있는 경우 제11장제1절(단일판매-공급계약 진행상황 제외) 및 제11장제2절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# 붙임2 「단일판매·공급계약」공시서식 개정 내용

# □ 유가증권시장

현	행	개	정 안			
단일판매ㆍ	공급계약체결	단일판매・공급계약체결				
1. 판매ㆍ공급계약 구분		1. 판매・공급계약 구분				
-체결계약명		-체결계약명				
	계약금액(원)		계약금액(원)			
	최근매출액(원)	]	최근매출액(원)			
2. 계약내역 	매출액대비(%)	-  2. 계약내역 	매출액대비(%)			
	대규모법인여부		대규모법인여부			
3. 계약상대		3. 계약상대				
-회사와의 관계		-회사와의 관계				
4. 판매·공급지역		4. 판매·공급지역				
5. 계약기간	시작일	       5. 계약기간	시작일			
5. 세탁기신 	종료일	]  5. 세탁기신 	종료일			
6. 주요 계약조건		6. 주요 계약조건	계약금·선급금 유무			
7. 계약(수주)일자		0. 구표 계탁조선	대금지급 조건 등			
8. 공시유보 관련내용	유보사유	7. 계약(수주)일자				
0. 중시규모 전단대중 	유보기한	        8. 공시유보 관련내용	유보사유			
9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학	한 중요사항	]  0. 중시규모 선단대중     	유보기한			
		9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				
   ※ 관련공시		(예시문구)				
		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 상기 8. 공시유보와 관련 기밀로 인해 비공개되었으	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니다. 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경영 므로, 투자자는 계약의 변동·해지 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			
		※ 관련공시				

# □ 코스닥시장

현	행		개	정	안		
단일판매・공급계약체결			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				
1. 판매・공급계약 내용			1. 판매·공급계약 내용				
	조건부 계약여부			조건부	계약여부		
	확정 계약금액			확정 계	약금액		
	조건부 계약금액		2 7 10 11 11 01		계약금액		
2. 계약내역	계약금액 총액(원)		2. 계약내역 	계약금역	액 총액(원)		
	최근 매출액(원)			최근 마	출액(원)		
	매출액 대비(%)			매출액	대비(%)		
3. 계약상대방			3. 계약상대방				
-최근 매출액(원)			-최근 매출액(원)				
-주요사업			-주요사업				
-회사와의 관계			-회사와의 관계				
-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	계약 이행여부		-회사와 최근 3년간 동	종계약 여	기행여부		
4. 판매·공급지역			4. 판매·공급지역				
5 310131	시작일		5. 계약기간	시작일			
5. 계약기간	종료일		J. 711 77 E	종료일			
6. 주요 계약조건			6. 주요 계약조건	계약금·	선급금 유무		
	자체생산		0. 1 11 711 7 1 2 2	대금지	급 조건 등		
7. 판매·공급방식	외주생산			자체생선	산		
	기타		7. 판매・공급방식	외주생선	산		
8. 계약(수주)일자				기타			
. 7.110.11.71.71.71	유보기한		8. 계약(수주)일자				
9. 공시유보 관련내용	유보사유		   9. 공시유보 관련내용	유보기	한 		
10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	고할 사항		3. 6 1112 22 116				
			10. 기타 투자판단에 침	고할 사	항 		
			(예시문구)				
※ 관련공시			상기 6. 주요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시				
			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. 상기 9. 공시유보와 관련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경영				
			기밀로 인해 비공개되었으므로, 투자자는 계약의 변동 해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				
				※ 관련공시			

- 1. 단일판매· 공급계약체결 공시서식 개정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?
- □ 기존 공시서식에서 주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며,
  - ㅇ 기업 입장에서도 계약상대방과의 별도의 행위 없이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시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임
  - 2. 단일판매 · 공급계약체결 이후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미이행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?
- □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공시내용을 전면취소한 것으로 보아 공시번복에 해당하며,
  - 계약이행률이 50%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음

3.	계약체결	시	계약금액의	↓ 공시유보가	허용된	경우에는	정기보고서에
	계약 진항	상	강 기재를	생략해도 되는	≣지?		

- □ 개정 작성지침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공시유보가 허용된 항목에 대해 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, 계약금액이 유보된 경우 판매공급 금액과 대금수령금액 진행상황 기재도 생략 가능함
  - 다만, 이 경우 금액 기재를 생략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, 금액 기재 대신 판매·공급금액 및 대금수령금액의 계약금액 총액 대비 계약 진행률(%)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
- 4. 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\*에 따라 이미 분기별로 계약 진행상황을 기재하고 있는데, 중복 공시가 아닌지?
  - \* 제11-1-1조(공시사항의 진행·변경상황) 제1항
- □ 단일판매·공급계약 진행상황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등 기존 작성서식을 보완(구체화)한 것으로 중복공시에 해당하지 않으며,
  - 특히,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동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주기를 반기 단위로 완화하였으며, 분기보고서에는 기재생략 가능